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
● 사업목적

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(출산전후휴가급여)의 사각지대 해소

- 소득활동을 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'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·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

●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
지원대상

소득활동을 하지만,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

- 비임금근로자 : 1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유계약직 (프리랜서)
- 임금근로자
 - 고용보험적용제외자 : 초단시간근로자, 4인이하 농림어업
 -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180일 수급 요건 미충족자

지원내용

총 150만원(월 50만원×3월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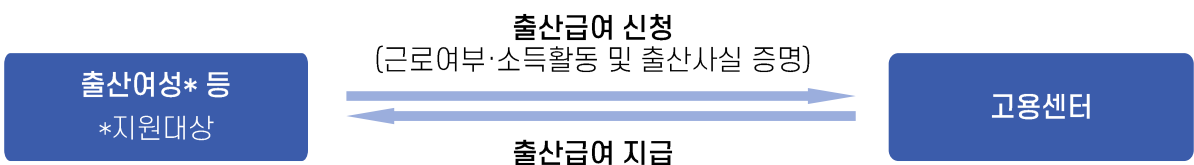
신청시기

출산일~출산후 1년 이내 신청

전달체계

고용센터(모성보호 담당부서)

● 사업추진체계(지원절차)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14
051-860-2903
051-860-1910
051-860-2063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41~2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43~4
051-330-9956